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생활 인구 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시·군·구 소득분배 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래 인구 추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85”를 “6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4”를 “6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4”를 “68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통계정책국) ① (생 략)	제7조(통계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삭 제></u>
<u>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제10조(조사관리국) ① (생 략)	제10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3. 삭 제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신 설></u>	<u>19.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u>

<u><신 설></u>	<u>지원에 관한 사항</u> <u>21.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u> <u>항</u>
--------------------	---

신·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85</u>		<u>693</u>	+8	
	.		.		.		
	.		.		.		
일반직 계			<u>684</u>		<u>692</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74</u>		<u>682</u>	+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